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제1절 원산지 규정

제3.1조 원산지 상품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경우 상품은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 가. 상품이 전적으로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경우
- 나. 상품이 이 장에 따른 원산지 재료로만 전적으로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또는
- 다. 상품이 부속서 3-가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면서,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전적으로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그리고 그 상품은 이 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한다.

제3.2조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제3.1조가호의 목적상, 다음 상품은 전적으로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이다.

- 가. 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 나. 당사국의 영역에서 가호에 언급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획득한 상품
- 다. 당사국의 영토, 내수 또는 영해 내에서 수행된 수렵, 텃사냥, 어로, 양식, 채집 또는 포획으로부터 획득된 상품
- 라. 당사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하여 당사국 영해 밖의 수역, 해저 또는 하부토양에서 획득한 어로 상품 및 그 밖의 수산물
- 마. 당사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가공선박에서 라호에 언급된 상품만을 사용하여 생산되거나 가공된 상품
- 바.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 및 수확, 수집 또는 채집된 식물과 식물 생산품
- 사. 당사국의 토양, 수역, 해저 또는 해저 하부로부터 추출된 광물과 그 밖의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물질

아. 당사국의 영해 밖의 해저 또는 해저 하부로부터 당사국 또는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채취 또는 추출된 상품. 다만, 그 당사국이 그러한 수역, 해저 또는 하부토양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경우에 한정한다.

자. 다음으로부터 얻어진 폐기물 및 부스러기

1)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제조 공정, 또는

2) 당사국 영역에서 수집된 중고품. 다만, 그러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는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하여야 한다. 그리고

차. 가호부터 자호까지의 규정에 명시된 상품으로만 생산된 상품

제3.3조 역내가치포함비율(RVC)

1. 상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은 다음 방법 중 하나에 기초하여 산정된다.

가. 비원산지재료의 가치를 기초로 한 방법(공제법)

$$\text{역내가치포함비율 (RVC)} = \frac{\text{본선인도가격(FOB)} - \text{비원산지재료가치(VNM)}}{\text{본선인도가격(FOB)}} \times 100$$

나. 원산지재료의 가치를 기초로 한 방법(집적법)

$$\text{역내가치포함비율 (RVC)} = \frac{\text{원산지재료가치(VOM)}}{\text{본선인도가격(FOB)}} \times 100$$

이 경우,

역내가치포함비율(RVC)은 백분율로 표시된 역내가치포함비율이다.

본선인도가격(FOB)은 상품의 본선인도가격이다.

비원산지재료가치(VNM)는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이다. 그리고

원산지재료가치(VOM)는 원산지 재료의 가치이다.

2. 비원산지재료의 가치는 다음과 같다.

가. 상품의 생산자에 의하여 직접 수입된 재료의 경우, 재료 수입 시 운임보험료포함가격

나. 상품이 생산된 영역에서 생산자에 의하여 획득된 재료의 경우, 화물비, 보험료, 포장비 및 공급자의 창고로부터 생산자의 소재지로 그 재료를 운송하는데 발생한 그 밖의 비용을 고려하지 아니하는 거래 가치, 또는

다. 자가생산된 재료의 경우 또는 상품의 생산자와 재료의 판매자 간의 관계가 그 재료에 실제로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어야 할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일반적인 비용을 포함하여 재료의 생산에서 발생된 모든 비용의 총합. 추가적으로, 통상적인 거래과정에서 부가되는 이윤에 상당하는 이윤액을 추가할 수 있다.

3. 이 조에 언급된 가치는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결정된다.

제3.4조 중간재

원산지 상품이 그 이후 다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그 이후에 생산된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결정하는 목적상 원산지 상품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는 고려되지 아니한다.

제3.5조 불인정 공정

1. 이 장에 따른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의 공정은 원산지 상품 지위 부여를 위한 불인정 공정으로 간주된다.

- 가. 운송 및 보관 중 상품이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공정
- 나. 포장의 변경 또는 포장물의 해체 또는 조립
- 다. 세탁, 세척, 먼지·녹·기름·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제거
- 라. 방직용 섬유의 다림질 또는 압착
- 마. 단순한 페인팅 및 광택 공정
- 바. 곡물 및 쌀의 탈각, 부분 또는 전체 표백, 연마 및 도정
- 사. 병, 캔, 플라스크, 가방, 케이스, 상자에 단순히 넣기, 카드 또는 판에 붙이기,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단순한 포장 공정
- 아. 다른 종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의 단순한 혼합
- 자.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는 물품 부품의 단순한 조립 또는 제품의 부품으로의 분해
- 차. 동물의 도살
- 카. 건조, 염장(또는 염수장), 냉장 또는 냉동
- 타. 상품 또는 그 포장에 표장, 라벨, 로고 및 이와 유사한 그 밖의 구별표시의 부착
- 파. 과일, 견과류 및 채소에 대한 탈피, 씨 제거 및 탈각
- 하. 연마, 단순 분쇄 또는 단순 절단

- 거. 감별, 체질, 선별, 분류, 등급화, 또는
 - 너. 가호부터 거호까지 규정된 둘 이상의 공정의 조합
2. 이 조의 규정은 당사국들의 원산지 재료로 생산된 원산지 상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이 조의 목적상
- 가. **단순한**이란 특별한 기술이나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기계, 기기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활동을 말한다. 그리고
 - 나. **단순한 혼합**이란 특별한 기술이나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기계, 기기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활동을 말한다. 다만, 화학반응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6조 누적

1.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또는 한국의 영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이나 재료가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또는 한국의 영역 내에서 최종재의 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그 상품이나 재료는 그 최종재의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후자의 영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1 2}
2. 한국과 최소 1개의 중미 공화국은 양 당사국 모두 무역협정을 체결한 제3국³과 원산지를 누적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산지 규정의 규약을 개선할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제3.7조 최소허용수준

부속서 3-가에 따른 세번변경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상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될 것이다.

- 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제1류부터 제24류까지 그리고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상품에 대해서는, 필요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본선인도가격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 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제15류부터 제24류까지에 규정된 상품에 대해서는, 비원산지재료가 이 호에 따라 원산지가 결정되는 상품의 소호와

¹ 제1항의 이행을 목적으로, 원산지 누적은 동일한 품목별원산지규정을 가진 공화국들 간에만 적용된다.

² 당사국은 이 협정이 발효되지 아니한 중미 공화국의 상품 또는 재료는 누적하지 아니한다.

³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3국”이란 한국과 중미 공화국들을 제외한 모든 국가를 말한다.

다른 소호에 규정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필요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본 선인도가격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 다.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규정된 상품에 대해서는, 필요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중량이 그 상품의 총 중량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8조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

1. 특혜관세대우 부여의 목적상 상품 또는 재료가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모든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는 다음에 의하여 구별한다.

가. 각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의 물리적 분리, 또는

나. 생산이 이루어지는 당사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서 인정되는, 또는 생산이 이루어지는 당사국에 의하여 달리 인정되는, 평균법, 후입선출법(LIFO) 또는 선입선출법(FIFO)과 같은 재고관리기법의 사용

2. 특정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선택된 재고관리기법은 그 재고관리기법을 선택한 인의 회계연도 동안 그 상품 또는 재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사용된다.

제3.9조 **세트**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일반해석규칙 3에 정의된 세트는 세트의 모든 구성품이 원산지 상품인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트가 원산지 및 비원산지 상품으로 구성되는 경우, 제3.3조에 따라 결정되는 비원산지 상품의 가치가 그 세트의 총 가치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세트는 전체가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제3.10조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수입 시 상품과 함께 인도된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의 원산지는

가. 그 상품이 세번변경요건의 적용대상인 경우, 고려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나. 그 상품이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의 적용대상인 경우, 그 상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의 산정을 할 때 각 경우에 맞게 원산지 또는 비원산지 재료로 고려된다.

다만,

- 가. 그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는, 송장에 명시되어 있거나 별도로 확인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상품과 별도로 송장이 발부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리고
- 나. 그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의 수량과 가치는 그 상품에 대하여 통상적인 수준이어야 한다.

제3.11조 소매용 포장재료 및 용기

1. 포장 재료 및 용기가 상품과 함께 분류되는 경우, 상품의 소매용 포장에 사용되는 포장재료 및 용기의 원산지는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고려되지 아니한다. 다만,
 - 가. 제3.1조가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상품이 전적으로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되어야 하거나
 - 나. 제3.1조나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상품이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되어야 하거나
 - 다. 상품이 부속서 3-가에 규정된 세번변경요건의 적용대상이 되어야 한다.
2. 상품이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소매용으로 사용되는 포장재료 및 용기의 가치는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 고려된다.

제3.12조 수송을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

운송 중인 상품의 보호를 위하여 사용되는 포장재료 및 용기는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 고려되지 아니한다.

제3.13조 간접재료

1.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목적상, 제2항에 정의된 간접재료의 원산지는 고려되지 아니한다.
2. 간접재료란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나, 그 상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도 아니하고 그 일부를 구성하지도 아니하는 물품을 말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 가. 연료, 에너지, 촉매제 및 용제
 - 나. 상품의 시험 또는 검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설비, 장치 및 보급품
 - 다. 장갑, 안경, 신발, 의류, 안전장비 및 보급품
 - 라. 공구, 금형 및 주형

- 마. 설비 및 건물의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품 및 재료
- 바. 생산에 사용되거나 설비 및 건물의 운영에 사용되는 윤활제, 그리스, 혼합물 및 그 밖의 재료, 그리고
- 사. 상품에 결합되지는 아니하나 그 상품 생산의 일부로 사용되었음이 합리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상품

제3.14조 직접운송

1. 상품이 그 원산지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출 당사국에서 수입 당사국으로 직접 운송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 이상의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을 경유하여 운송되는 상품은 경유국에서의 환적 또는 일시 보관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을 조건으로, 수출 당사국에서 수입 당사국으로 직접 운송된 것으로 간주된다.

- 가. 그 상품이 관세당국의 통제하에 있을 것, 그리고
- 나. 그 상품이 경유국에서 하역 및 재선적, 재포장 또는 그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공정 이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할 것

3. 제2항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증거는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다음을 제출하여 제공된다.

- 가. 수출 당사국으로부터 경유국을 통한 통과를 다루고 있는 단일 운송서류
- 나. 경유국으로부터 수입당사국까지의 통과를 다루고 있는 운송서류와 다음을 포함하고 있는 경유국 관세당국이 발행한 증명서
 - 1) 제품의 정확한 설명
 - 2) 제품의 하역 및 재선적 일자,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선박명 또는 사용된 다른 운송수단, 그리고
 - 3) 제품이 경유국에 머물러 있는 그 상태, 또는
- 다. 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제4장(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에 설립된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와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위원회에서 당사국들이 합의한,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을 만족시키는 모든 입증 서류

제3.15조 역외가공

제3.1조에도 불구하고, 특정 상품은 한국에서 수출되고 그 이후 한국에 재수입된 재료에

대하여 한국 밖에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쳤다 하더라도 그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다만, 그 작업 또는 가공은 부속서 3-나에 따라 당사국들이 지정한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3.16조 상품의 재수출⁴

1. 한국과 중미 공화국들은 당사국이 발행하는 상품의 재수출증명서를 인정한다. 재수출증명서는 이 협정의 비당사국으로부터 들어오고 그 이후 재수출 당사국의 영역 내에 위치한 자유지역⁵에서 다른 쪽 당사국으로 재수출되는 상품에 대한 통제 및 감시를 증명한다. 그러한 상품의 원산지 지위는 그 비당사국과 다른 쪽 당사국 간에 발효 중인 무역협정에 따라 결정된다.

2. 제1항 적용의 목적상, 다음이 요구된다.

가. 당사국의 자유지역 내에서, 그 상품이 그 원산지 지위를 변화시키는 변형 공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상품이 관세당국의 통제와 감시하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나. 그 상품에 수행된 공정⁶이 당사국 영역 내 자유지역의 관세당국이 발행한 재수출 증명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제2절 원산지 절차

제3.17조 원산지 증명서

1. 각 당사국은 원산지 증명서에 근거하여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부터 수입되는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이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대우를 부여한다.

2. 이 장의 목적상, 당사국들은 이 협정과 함께 발효되고 그 이후 공동위원회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는 부속서 3-다에 규정된 원산지 증명서 단일 양식을 수립하였다.

3. 특혜관세대우를 받기 위하여 수입자는 수입 당사국에서 적용되는 절차에 따라 원산지 상품의 수입시점에 특혜관세대우를 요청한다.

4.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출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원산지 증명서는

⁴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는 한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에만 적용되며, 제1장(최초규정 및 일반적 정의)에 언급된 대로 중미 공화국들 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⁵ 자유지역은 한국 또는 중미 공화국들 내에 위치한다.

⁶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 조의 목적상, 그러한 공정은 당사국과 비당사국 간 무역협정에 따라 허용되는 환적, 하역, 보관, 화물의 분해 또는 분리, 송장, 재선적, 재포장, 라벨링, 포장 또는 취합, 또는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변형하거나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그 밖의 모든 공정과 같은 물류 공정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인쇄본 또는 당사국들이 합의하는 전자본을 포함한 그러한 그 밖의 매체로 작성된다. 그리고

나. 영어로 작성된다.

5. 각 당사국은

가. 수입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상품의 수입 시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는 상품의 모든 수출에 대하여 자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도록 요구한다. 그리고

나. 자국 영역의 수출자가 그 상품의 생산자가 아닌 경우, 그 수출자가 다음에 근거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1)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수출자의 인지

2)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생산자의 서면 진술에 대한 수출자의 합리적인 신뢰, 또는

3)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한, 그 상품을 위하여 작성하고 서명한 원산지 증명서

6. 당사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하여 적절히 작성되고 서명된 원산지 증명서는 다음에 적용될 수 있다.

가.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 하나 이상 상품의 단일 선적, 또는

나. 원산지 증명서에 명시된 기간으로서 그 발급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같은 수입자에 대한 동일한 상품의 복수 선적

**제3.18조
원산지 증명서 면제**

원산지 증명서는 다음의 경우 요구되지 아니한다.

가. 수입의 관세가격이 미화 1천 달러 또는 수입 당사국의 통화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나 수입 당사국이 설정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이는 그 수입이 이 협정에 따라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규율하는 당사국 법의 준수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거나 계획된 것으로 수입 당사국이 간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나. 수입 당사국이 수입자에게 원산지를 입증하는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상품인 경우

**제3.19조
원산지 증명서의 효력**

1. 원산지 증명서는 수출 당사국에서 그 서명일부터 1년간 유효하다.
2. 제1항에 명시된 제출 마감일 후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된 원산지 증명서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정해진 마감일까지 이들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특혜관세대우의 적용 목적상 수리될 수 있다.

제3.20조 특혜관세대우의 신청

1.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자국 영역의 수입자에게 다음을 요구한다.
 - 가.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적시하는 서면 진술서를 세관신고 시 유효한 원산지 증명서에 근거하여 작성한다.
 - 나. 가호에 언급된 진술서 작성 당시의 원산지 증명서를 소지한다.
 - 다. 적용 가능한 경우, 제3.14조에 수립된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소지한다. 그리고
 - 라. 요구되는 경우, 유효한 원산지 증명서 및 다호에 언급된 문서를 관세당국에 제출한다.
2. 수입자가 진술서의 근거가 된 원산지 증명서가 부정확한 정보를 포함한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수입자는 각 당사국의 법규에 따라 정정된 진술서를 작성하고 부담하여야 할 모든 관세를 납부한다.
3. 수입자가 이 장에 따른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출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가 거부된다.
4.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자국의 영역에 수입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 아니거나, 이 장에 수립된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그 상품의 반출을 방해하지 아니하며, 자국의 관련 법규에 따라 진행한다.

제3.21조 수입 이후 특혜관세대우의 신청

상품이 수입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될 때 원산지 상품이었으나, 그 상품의 수입자가 수입 당시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그 수입자가 수입일부터 1년 이내에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고, 수입 당사국에게 다음을 제시하는 경우,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가 부여되지 아니한 결과로 납부하였던 초과 관세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 가. 그 상품이 수입 당시에 원산지 상품이었다는 수입 당사국의 법규에 따른 서면 또는 전자 신고서 또는 진술서
- 나.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었음을 입증하는 원산지 증명서 원본, 그리고

다. 수입 당사국이 요구할 수 있는, 상품 수입과 관련된 그 밖의 문서

제3.22조 기록유지요건

1. 원산지 증명서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고 이 장에 따른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기록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가. 수출된 상품의 구매, 비용, 가치와 그에 대한 지불과 관련된 문서

나. 수출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간접재료를 포함한 모든 재료의 구매, 비용, 가치와 그에 대한 지불과 관련된 문서

다. 수출되었던 형태로의 상품의 생산과 관련된 문서, 그리고

라. 당사국들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문서

2.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는 수출 당사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제1항에 언급된 기록을 원산지 증명서 발급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한다.

3. 당사국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는 원산지 증명서 사본을 포함하여 수입과 관련된 기록을 상품 수입일부터 수입 당사국의 법규에 명시된 기간 동안 보관한다.

4.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디지털, 전자, 광학, 자기 또는 서면 형태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는 아니하는, 신속한 검색이 가능한 모든 매체에 제1항에 언급된 기록을 보관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제3.23조 불일치 및 형식적 오류

1. 수입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원산지 증명서가 판독이 불가능하거나, 오류, 누락, 삭제, 말소, 수정이 있거나, 행간에 기재된 사항이 있거나, 제3.17조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당국은 수입자에게 해당 증명서 거부 통지로부터 45일 이내 새 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1회 부여한다. 새 원산지 증명서는 기존 원산지 증명서에 설정된 기간의 남은 기간 동안 유효하다.

2. 원산지 증명서에서 맞춤법상 오류 및 타자 오류는, 이러한 오류가 이 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한 의심을 야기하는 것이 아닌 경우, 이 서류가 거부되는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제3.24조 검증

1.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부터 당사국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

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다음 수단에 의하여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 가.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추가 정보 요청
- 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추가 정보 요청
- 다.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게 상품의 원산지 검증 지원 요청
- 라. 설비와 상품의 생산과정 및 회계서류를 포함하는 제3.22조에 언급된 기록을 검토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공무원이 동행하는, 다른 쪽 당사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에 대한 방문검증, 또는
- 마. 당사국들이 합의하는 그 밖의 모든 수단

2. 제1항에 따른 수입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요청은 영어로 작성된다. 이러한 요청에 대한 답변으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선택에 기초하여 영어 또는 수입 당사국의 공식 언어로 작성된다.

3. 제1항가호 및 제1항나호의 목적상,

- 가. 수입 당사국이 작성한 추가 정보에 대한 서면 요청서는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요청된 정보 및 서류를 제공하여야 하는 기한이 서면 요청서의 접수일로부터 30일, 또는 당사국들이 합의할 수 있는 보다 더 긴 기간이라는 것을 적시할 것이다. 그리고
- 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가호에 언급된 기한 내에 요구된 정보와 서류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검증 완료 전에 고려될 서면 의견 또는 추가 정보를 제공하라는 최소 30일의 서면 통보를 제공한 후 해당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있다.

4. 수입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제1항다호에 따라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 가. 그 당국은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다음을 제공한다.
 - 1) 그러한 검증 지원을 요청하는 이유
 - 2) 상품의 원산지 증명서 또는 그 사본, 그리고
 - 3) 그러한 요청의 목적상 필요할 수 있는 모든 정보 및 서류
- 나.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수입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사실 및 조사결과를 포함한 영문 서면 진술서와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하여 이용가능하게 된 증빙서류를 제공한다. 이 진술서에는 문서들이 정본인지 여부와 해당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고, 이 장에 따른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분명히 적시한다.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 그 서면 진술서는 그 상품이 어떻게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였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포함한다. 그리고

- 다.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요청 접수일 후 150일 이내에 서면 진술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제공된 서면 진술서가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해당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있다.
5. 수입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제1항라호에 따라 검증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 가. 그 당국은 방문검증 30일 전에 그러한 요청에 대하여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러한 통지의 사본을 제공한다.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통지 접수일 후 30일 이내에 그러한 요청에 대한 서면동의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해당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있다. 그리고
- 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방문검증 요청에는 합의하나 제안된 방문검증을 연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입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방문검증에 대한 승인과 함께 이를 통지 받는다. 그러한 연기는 제안된 방문검증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6. 수입 당사국은 검증 개시 후 1년 이내에 수입자 및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에 대한 결정과 더불어 사실관계 판명과 그 결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필요한 경우, 그리고 1회에 한정하여, 위에 언급된 기간은 최대 90일 까지 연장될 수 있다. 이러한 연장은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 및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통지된다.
7. 당사국은 그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동일한 상품이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이전에 결정하였을 경우, 그 상품이 이 장에 따른 요건을 준수한다는 것이 증명되기 전까지, 그 상품의 이후 수입에 대하여 수입자에게 특혜관세대우를 중지할 수 있다.
8. 당사국은 증빙서류 및 그 밖의 모든 관련 정보를 포함한 이 조에 따라 요청되는 모든 정보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전자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3.25조 특혜관세대우의 거부

제3.23조 또는 이 장의 그 밖의 조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거부하거나 미납된 관세를 징수할 수 있다.

- 가. 상품이 이 장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 나. 상품의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특혜관세대우를 획득하기 위한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못했을 경우

제3.26조 통일규정

당사국들은 이 장의 해석, 적용과 운영 및 당사국들이 합의하는 그 밖의 사안에 관한 통일규정을 수립한다.

제3.27조 제3국 송장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수출 당사국의 영역 밖에 소재하는 인에 의하여 송장이 발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거부하지 아니한다.

제3.28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양식이란, 특히 정기적인 방류, 급식, 천적으로부터의 보호와 같이 생산 증대를 위한 사육 또는 성장 과정에 개입하여, 어류·연체동물·갑각류·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 및 수생식물을 포함한 수생생물을 알·치어·작은 물고기 및 유생동물 같은 종자로부터 기르는 것을 말한다.

운임보험료포함가격이란 수입국으로 들어오는 항구 또는 반입지까지의 보험비용 및 운임을 포함한 원산지 국가에서의 상품의 가격을 말한다.

권한 있는 당국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기획재정부

나. 코스타리카의 경우,

1) 행정 목적상, 대외무역부(Ministerio de Comercio Exterior)의 세계무역협정이행국(Dirección de Aplicación de Acuerdos Comerciales Internacionales), 그리고

2) 검증 절차의 경우, 재정부(Ministerio de Hacienda)의 관세총국(Dirección General de Aduanas)

다. 엘살바도르의 경우,

1) 행정 목적상, 경제부(Ministerio de Economía)의 무역협정운영국(Dirección de Administración de Tratados Comerciales), 그리고

2) 검증 절차의 경우, 재정부(Ministerio de Hacienda)의 관세총국(Dirección General de Aduanas)

라. 온두라스의 경우,

1) 행정 목적상, 경제개발부(Secretaría de Estado en el Despacho de Desarrollo Económico), 그리고

- 2) 검증 절차의 경우, 협정 운영 및 교섭 총국 및 관세수익국(Dirección General de Administración y Negociación de Tratados en coordinación con la Dirección Adjunta de Rentas Aduaneras)

마. 니카라과의 경우,

- 1) 행정 목적상, 산업통상개발부(Ministerio de Fomento, Industria y Comercio)의 무역협정이행교섭국(Dirección de Aplicación y Negociación de Acuerdos Comerciales), 그리고
- 2) 검증 절차의 경우, 세관총국(Dirección General de Servicios Aduaneros)

바. 파나마의 경우,

- 1) 원산지 증명서 발급 목적상, 산업통상부(Ministerio de Comercio e Industrias), 그리고
- 2) 원산지 증명 검증의 경우, 국가세관당국(Autoridad Nacional de Aduanas)

또는 그 승계기관

수출자란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며 상품을 수출하는 인을 말한다.

본선인도가격이란 운송수단과 관계없이, 해외 최종 선적 항구 또는 장소까지 드는 운송 비용을 포함한 상품의 본선인도가격을 말한다.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란 상업적 목적으로 호환 가능하고 그 특성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상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란 수입, 경비, 비용, 자산 및 부채의 기록, 정보의 공개 그리고 재무제표의 작성에 대하여 당사국의 영역에서 인정된 컨센서스 또는 실질적이고 권위있는 지지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은 세부 표준, 관행 및 절차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적용을 위한 폭넓은 지침을 포함할 수 있다.

상품이란 모든 제품, 생산품, 물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수입자란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며 상품을 수입하는 인을 말한다.

재료란 부품, 원료, 원재료, 부분품 또는 조각을 포함하여 다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상품을 말한다.

비원산지 상품 또는 비원산지 재료란 이 장에 따라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상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원산지 재료란 제3.1조에 따른 원산지 재료의 자격을 갖춘 재료를 말한다.

생산자란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품의 생산에 종사하는 인을 말한다. 그리고

생산이란 상품의 재배 · 사육 · 추출 · 채집 · 수집 · 채굴 · 수확 · 어로 · 텃사냥 · 수렵 · 제조 · 가공 또는 조립을 말한다.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제1부 일반주해

1. 이 부속서에 규정된 원산지 규정의 해석 목적상,
 - 가. 특정 호 또는 소호에 적용되는 특정 기준 또는 특정 기준들은 그 호 또는 소호 바로 옆에 규정된다.
 - 나. 세번변경의 요건은 비원산지 재료에만 적용한다.
 - 다. 특정 원산지 규정이 세번변경기준을 사용하여 정의된 경우, 그 규정은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각각의 비원산지 재료가 세번변경을 거친 경우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 라. 품목별 원산지 규정이 세번변경기준을 사용하여 정의되고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류, 호 또는 소호의 차원에서 특정 세번은 제외하도록 기재된 경우, 그 원산지 규정은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 그 제외된 특정 세번으로 분류된 재료가 원산지 재료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 마. 호 또는 소호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상 선택기준의 대상이 되는 경우, 상품이 그러한 선택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면, 규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2. 이 부속서의 목적상,
 - 류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류를 말한다.
 - 화학반응이란 분자 내 결합의 파괴 및 새로운 분자 내 결합의 생성, 또는 분자 내 원자의 공간배열 변경을 통하여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를 만들어내는 가공(생화학 가공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호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에 따른 세번에서 처음 4단위를 말한다.
 - 부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부를 말한다. 그리고
 - 소호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에 따른 세번에서 처음 6단위를 말한다.

제2부
품목별 원산지 규정

제1부	살아 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제1류-제5류)
제1류	살아 있는 동물
0101.21-0106.90	제1류의 모든 동물은 완전하게 획득된다.
제2류	육과 식용 설육(屑肉)
0201.10-0210.99	제2류의 모든 물품은 완전하게 획득된다.
제3류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제3류 주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은 비원산지 치어 ¹ 또는 유생동물로부터 양식된 경우에도 원산지 물품으로 간주된다. 주 ¹ : 치어란 후기유생기에 있는 덜 자란 물고기를 말하며, 핑거링스(fingerlings), 파(parr), 스몰트(smolts) 및 엘버(elvers)를 포함한다.
0301.11-0308.90	제3류의 모든 물품은 완전하게 획득된다.
제4류	낙농품, 새의 알, 천연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0401.10-0410.00	제4류의 모든 물품은 완전하게 획득된다.
제5류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0501.00-0511.99	제5류의 모든 물품은 완전하게 획득된다.
제2부	식물성 생산품(제6류-제14류)
제2부 주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배한 농산물 및 원예상품은 비당사국에서 수입한 씨앗, 인경, 근경, 삽수, 접지, 접목, 싹, 봉오리 또는 기타 살아 있는 식물의 일부에서 재배한 경우에도 그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물품으로 취급된다.
제6류	살아 있는 수목과 그 밖의 식물, 인경(鱗莖)·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절화(切花)와 장식용 잎
0601.10-0604.90	제6류의 모든 물품은 완전하게 획득된다.
제7류	식용의 채소·뿌리·괴경(塊莖)
0701.10-0714.90	제7류의 모든 물품은 완전하게 획득된다.
제8류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멜론의 껍질
0801.11-0814.00	제8류의 모든 물품은 완전하게 획득된다.
제9류	커피·차·마테(maté)·향신료
0901.11-0910.99	제9류의 모든 물품은 완전하게 획득된다.
제10류	곡물
1001.11-1008.90	제10류의 모든 물품은 완전하게 획득된다.
제11류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inulin), 밀의 글루텐(gluten)
1101.00-1102.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1101.00호부터 제1102.2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1102.90-1103.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0류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소호 제1102.90호부터 제1103.11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1103.13	소호 제1103.13호의 모든 물품은 완전하게 획득된다.
1103.19-1104.2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0류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소호 제1103.19호부터 제1104.22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1104.23-1104.30	소호 제1104.23호부터 제1104.30호까지의 모든 물품은 완전하게 획득된다.
1105.10-1105.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7류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소호 제1105.10호부터 제1105.2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1106.10-1106.30	소호 제1106.10호부터 제1106.30호까지의 모든 물품은 완전하게 획득된다.
1107.10-1108.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0류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소호 제1107.10호부터 제1108.11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1108.12	소호 제1108.12호의 모든 물품은 완전하게 획득된다.

1108.13-1108.14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7류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소호 제1108.13호부터 제1108.1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1108.19-1108.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7류 또는 제10류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소호 제1108.19호부터 제1108.2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1109.0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1109.0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12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종자와 과실, 공업용·의약용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1201.10-1214.90	제12류의 모든 물품은 완전하게 획득된다.
제13류	락(lac), 검·수지·그 밖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1301.20-1302.39	제13류의 모든 물품은 완전하게 획득된다.
제14류	식물성 편조물(編組物)용 재료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
1401.10-1404.90	제14류의 모든 물품은 완전하게 획득된다.
제3부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식물성 납(蠟)(제15류)
제15류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식물성 납(蠟)
1501.10-1510.0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1501.10호부터 제1510.0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1511.10-1511.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207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소호 제1511.10호부터 제1511.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1512.11-1513.1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1512.11호부터 제1513.1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1513.21-1513.2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207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소호 제1513.21호부터 제1513.2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1514.11-1522.0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1514.11호부터 제1522.0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4부	조제 식료품, 음료·주류·식초, 담배·제조한 담배 대용물(제16류-제24류)
제16류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조제품
1601.00-1602.3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0201호 또는 제0202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소호 제1601.00호부터 제1602.3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1602.41-1602.4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0203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소호 제1602.41호부터 제1602.4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1602.50-1602.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0201호 또는 제0202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소호 제1602.50호부터 제1602.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1603.00-1605.6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1603.00호부터 제1605.6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17류	당류(糖類)와 설탕과자
1701.12-1703.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1701.12호부터 제1703.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1704.10-170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1704.10호부터 제1704.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18류	코코아와 그 조제품
1801.00-1802.0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1801.00호부터 제1802.0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1803.10-1803.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1803.10호부터 제1803.2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1804.00-1805.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1803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소호 제1804.00호부터 제1805.0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1806.10-180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1806.10호부터 제1806.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
제19류	곡물·고운 가루·전분·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1901.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0402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소호 제1901.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1901.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101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소호 제1901.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901.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0402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소호 제1901.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1902.11-1902.3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101호나 소호 제1103.11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소호 제1902.11호부터 제1902.3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902.40-1903.0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1902.40호부터 제1903.0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1904.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006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소호 제1904.10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1904.20-1904.3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1904.20호부터 제1904.3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1904.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006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소호 제1904.90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1905.10-1905.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101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소호 제1905.10호부터 제1905.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제20류	채소·과실·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2001.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2001.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001.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7류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소호 제2001.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002.10-2002.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0702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소호 제2002.10호부터 제 2002.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003.10-2003.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2003.10호부터 제2003.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004.10-2004.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7류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소호 제2004.10호부터 제2004.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005.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2005.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005.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7류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소호 제2005.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005.40-2007.9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2005.40호부터 제2007.9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008.11-2008.1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202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소호 제2008.11호부터 제2008.19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008.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소호 제0804.30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소호 제2008.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008.3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0805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소호 제2008.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008.40-2008.9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2008.40호부터 제2008.9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009.11-2009.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2009.11호부터 제2009.1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009.21-2009.2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2009.21호부터 제2009.2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009.31-2009.5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2009.31호부터 제2009.5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009.61-2009.7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2009.61호부터 제2009.7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009.81-2009.8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2009.81호부터 제2009.8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009.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2009.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21류	각종 조제 식료품
2101.11-2101.1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0901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소호 제2101.11호부터 제2101.12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101.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2101.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101.30-2103.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2101.30호부터 제2103.3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103.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2103.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104.10-2104.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2104.10호부터 제2104.2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105.0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4류 또는 제1901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소호 제2105.0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106.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2106.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10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1701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소호 제2106.90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22류	음료 · 주류 · 식초
2201.10-2201.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2201.10호부터 제2201.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202.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7류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소호 제2202.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202.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4류의 것, 소호 제1211.20호의 것 또는 소호 제1302.19호의 인삼제품은 제외한다)에서 소호 제2202.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203.00-2206.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2203.00호부터 제2206.0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207.10-2207.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005호 또는 제1703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소호 제2207.10호부터 제2207.2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208.20-2208.3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2208.20호부터 제2208.3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208.4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703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소호 제2208.4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208.50-2208.6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2208.50호부터 제2208.6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208.7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703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소호 제2208.7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208.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2208.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209.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2209.0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23류	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과 웨이스트(waste), 조제 사료
2301.10-2309.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2301.10호부터 제2309.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24류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2401.10-2401.30	소호 제2401.10호부터 제2401.30호까지의 모든 물품은 완전하게 획득된다.
2402.10-2403.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2402.10호부터 제2403.9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부	광물성 생산품(제25류-제27류)
제25류	소금, 황, 토석류(土石類), 석고, 석회 및 시멘트
2501.00	소호 제2501.00호의 모든 물품은 완전하게 획득된다.
2502.00-2520.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2502.00호부터 제2520.1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520.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2520.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2521.00-2522.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2521.00호부터 제2522.3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523.10-2523.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2523.10호부터 제2523.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524.10-253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2524.10호부터 제2530.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26류	광(鑛)·슬래그(slag)·회(灰)
2601.11-262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2601.11호부터 제2621.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27류	광물성 연료·광물유(鑛物油)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瀝靑)물질, 광물성 왁스
2701.11-2708.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2701.11호부터 제2708.2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709.00-2710.1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2709.00호부터 제2710.12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710.19	소호 제2710.19호 안에서나 소호 제2710.19호 밖에서 소호 제2710.19호의 윤활유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2710.19호에 해당하는 윤활유 이외의 다른 물품으로 변경된 것
2710.20-2710.9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2710.20호부터 제2710.9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711.11-2711.1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2711.11호부터 제2711.1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711.1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2711.1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711.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2711.2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711.29-2715.0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2711.29호부터 제2715.0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716.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2716.0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6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의 생산품(제28류-제38류)
주1	제6부의 규칙 1부터 규칙 7까지의 규정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이 부의 류 또는 호에 해당하는 상품은, 그러한 규칙에서 달리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주2	주1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이 부의 원산지 기준에 명시된 적용가능한 세번 변경기준 또는 적용가능한 부가가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이다.
규칙 1	화학 반응 원산지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화학 반응의 결과로 생산된 제28류부터 제38류까지에 해당하는 상품(제3823호에 해당하는 상품은 제외한다)은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주	이 부의 목적상, “화학반응”이란 분자내 결합이 깨지고 새로운 분자내 결합 생성에 의하거나 분자내 원자의 공간배열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가 되는 공정(생화학 공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음 사항들은 원산지 상품 여부를 결정하는 목적상, 화학반응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가. 물 또는 다른 용제에 용해된 것 나. 용제(용매물을 포함한다)의 제거, 또는 다. 결정수의 첨가 또는 제거
규칙 2	정제 정제된 제28류부터 제38류까지에 해당하는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다만, 그 정제는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다음의 결과를 발생시켜야 한다. 가. 불순물의 80퍼센트 이상이 제거된 경우, 또는 나. 불순물의 감소 또는 제거 결과로 다음에 적합한 상품이 된 경우 1) 의약품, 의료용, 화장품용, 수의용, 또는 식용 물질 2) 분석, 진단, 또는 실험실용 화학제품 또는 시약 3) 미량요소에 사용되는 구성요소 또는 성분 4) 특수 광학용 5) 건강과 안전을 위한 무독성용 6) 생명공학용 7) 분리공정에 사용되는 캐리어, 또는 8) 핵등급용

규칙 3	혼합 및 배합 제30류, 제31류, 또는 제33류부터 제38류까지에 해당하는 상품(제3808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은 미리 결정된 명세서에 따라 재료의 의도적이고 비율이 통제되는 혼합 또는 배합(분산을 포함한다)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하여, 그 결과 투입재료와 다르고 그 상품의 목적 또는 용도와 관련된 다른 본질적인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을 가지는 상품이 생산된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규칙 4	입자 크기의 변화 제30류, 제31류, 또는 제33류에 해당하는 상품은 의도적이고 통제된 상품의 입자크기의 변형(중합체 용해와 그 후의 침전에 의한 미소화를 포함하고 단순 분쇄 또는 압착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하여, 그 결과 결과물의 목적에 관련된 정의된 입자 크기, 정의된 입자 크기 분포 또는 정해진 표면적을 가지면서 투입재료와 다른 본질적인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을 가진 상품이 되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규칙 5	표준 물질 제28류부터 제38류까지에 해당하는 상품은, 표준 물질의 생산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이 규칙의 목적상, “표준물질” (표준 용액을 포함한다)은 제조자에 의해 보증된 정확한 순도 또는 비율을 가진 것으로 분석, 검정, 또는 참조용에 적절한 조제품을 말한다.
규칙 6	이성체 분리 제28류부터 제38류까지에 해당하는 상품은 이성체 혼합물로부터 이성체의 유리 또는 분리가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규칙 7	분리 금지 인조 혼합물에서 하나 이상의 물질을 분리한 결과로서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세번이 변경된 제28류부터 제38류까지에 해당하는 상품은 유리된 물질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화학반응을 거치지 않았다면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되지 아니한다.
제28류	무기화합물, 귀금속·희토류(稀土類)금속·방사성원소·동위원소의 유기화합물이나 무기화합물
2801.10-2805.4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2801.10호부터 제2805.4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806.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2806.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806.20-2809.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2806.20호부터 제2809.2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810.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2810.0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811.11-2815.1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2811.11호부터 제2815.11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815.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2815.1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815.20-2853.0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2815.20호부터 제2853.0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29류	유기화합품
2901.10-2901.2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2901.10호부터 제2901.2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01.2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2901.2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02.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2902.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02.1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2902.1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02.20-2902.7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2902.20호부터 제2902.7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02.90-2903.1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2902.90호부터 제2903.12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03.1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2903.1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03.14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2903.1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03.1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2903.1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03.1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2903.1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03.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2903.2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03.22-2904.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2903.22호부터 제2904.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05.11-2905.1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2905.11호부터 제2905.16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05.17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2905.1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05.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2905.1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05.22-2905.2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2905.22호부터 제2905.2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05.31-2905.3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2905.31호부터 제2905.32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05.39-2906.2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2905.39호부터 제2906.2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07.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2907.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07.12-2907.13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2907.12호부터 제2907.13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07.1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2907.1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07.19-2907.2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2907.19호부터 제2907.21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07.22-2907.2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2907.22호부터 제2907.23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07.2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2907.2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08.11-2908.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2908.11호부터 제2908.91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08.9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2908.9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08.99-2909.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2908.99호부터 제2909.3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09.4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2909.4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09.43-2909.4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2909.43호부터 제2909.4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09.49-2910.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2909.49호부터 제2910.1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10.20-2910.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2910.20호부터 제2910.4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10.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2910.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11.00-2912.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2911.00호부터 제2912.11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12.12-2912.5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2912.12호부터 제2912.5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12.6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2912.6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13.0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2913.0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14.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2914.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14.12-2914.1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2914.12호부터 제2914.1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14.2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2914.2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14.23-2915.13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2914.23호부터 제2915.13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15.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2915.2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15.24-2915.2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2915.24호부터 제2915.2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15.31-2915.3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2915.31호부터 제2915.32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15.33-2915.36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2915.33호부터 제2915.36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15.3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2915.3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15.40-2916.1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2915.40호부터 제2916.11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16.12-2916.1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2916.12호부터 제2916.13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16.14-2917.13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2916.14호부터 제2917.13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17.1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2917.1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17.19-2917-34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2917.19호부터 제2917.3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17.35-2917.3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2917.35호부터 제2917.3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18.11-2928.0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2918.11호부터 제2928.0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29.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2929.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29.90-2935.0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2929.90호부터 제2935.0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36.21-2942.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2936.21호부터 제2942.0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30류	의료용품
3001.20-3003.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3001.20호부터 제3003.4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00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3003.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004.10-300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3003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소호 제3004.10호부터 제3004.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005.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3005.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00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3005.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006.10-3006.9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3006.10호부터 제3006.92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31류	비료
3101.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3101.0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102.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3102.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102.21-3105.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3102.21호부터 제3105.1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105.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3105.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105.30-3105.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3105.30호부터 제3105.4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105.51-3105.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3105.51호부터 제3105.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32류	유연용·염색용 추출물(extract), 탄닌과 이들의 유도체, 염료·안료와 그 밖의 착색제, 페인트·바니시(vernish), 퍼티(putty)와 그 밖의 매스틱(mastic), 잉크

3201.10-3203.0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3201.10호부터 제3203.0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204.11-3204.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3204.11호부터 제3204.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205.00-3206.5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3205.00호부터 제3206.5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207.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3207.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207.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3207.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207.3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3207.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207.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3207.4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208.10-3208.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3208.10호부터 제3208.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209.10-3209.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3209.10호부터 제3209.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210.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3209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소호 제3210.0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211.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3211.0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212.10-3215.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3212.10호부터 제3215.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33류	정유(essential oil)와 레지노이드(resinoid), 조제향료와 화장품·화장용품
3301.12-3301.3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3301.12호부터 제3301.3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30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3301.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302.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3302.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30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3302.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303.00-330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3303.00호부터 제3305.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306.10-330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3306.10호부터 제3306.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307.10-3307.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3307.10호부터 제3307.3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307.41-330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3307.41호부터 제3307.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제34류	비누·유기계면활성제·조제 세제·조제 윤활제·인조 왁스·조제 왁스·광택용이나 연마용 조제품·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조형용 페이스트(paste)·치과용 왁스와 플라스틱(plaster)를 기본 재료로 한 치과용 조제품
3401.11-3401.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3401.11호부터 제3401.2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401.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3402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소호 제3401.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402.11-3402.1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3402.11호부터 제3402.1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402.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소호 제3402.90호 또는 소호 제3402.11호의 알킬아릴술폰산의 가용성 염은 제외한다)에서 소호 제3402.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402.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3402.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403.11-340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3403.11호부터 제3404.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405.10-3405.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3405.10호부터 제3405.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406.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3406.0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407.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3407.0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제35류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glue), 호소
3501.10-3501.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3501.10호부터 제3501.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502.11-3502.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3502.11호부터 제3502.1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502.20-3502.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3502.20호부터 제3502.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503.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3503.0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504.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3504.0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505.10-3506.9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3505.10호부터 제3506.9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507.10-350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3507.10호부터 제3507.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36류	화약류, 화공품, 성냥, 발화성 합금, 특정 가연성 조제품
3601.00-3605.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3601.00호부터 제3605.0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606.10-3606.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3606.10호부터 제3606.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37류	사진용이나 영화용 재료
3701.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3701.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701.20-3701.9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3701.20호부터 제3701.9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702.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3702.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702.31-3703.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3702.31호부터 제3703.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704.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3704.0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705.10-3707.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3705.10호부터 제3707.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38류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3801.10-3802.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3801.10호부터 제3802.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803.00-3804.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3803.00호부터 제3804.0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805.10-3806.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3805.10호부터 제3806.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807.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3807.0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808.50-3812.3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3808.50호부터 제3812.3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813.00-3814.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3813.00호부터 제3814.0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815.11-3815.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3815.11호부터 제3815.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816.00-3823.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3816.00호부터 제3823.11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823.12-3824.83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3823.12호부터 제3824.83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82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3824.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825.10-3825.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28류, 제37류, 제40류 또는 제90류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소호 제3825.10호부터 제3825.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826.0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3826.0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7부	플라스틱과 그 제품, 고무와 그 제품(제39류-제40류)
제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3901.10-3904.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3901.10호부터 제3904.1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904.21-3904.2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3904.21호부터 제3904.22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염화비닐중합체(PVC)를 변경하여 합성 PVC 제품을 얻는 것을 포함한다]
3904.30-3919.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3904.30호부터 제3919.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920.10-3921.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3920.10호부터 제3921.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이 호의 플라스틱으로 성층 또는 적층한 시트(sheet)·판 및 스트립을 만드는 행위에 대해서는 원산지 지위를 부여한다.
3922.10-392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3922.10호부터 제3926.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40류	고무와 그 제품
4001.10-4001.3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4001.10호부터 제4001.3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4002.11-4005.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4002.11호부터 제4005.2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4005.91-4005.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4001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소호 제4005.91호부터 제4005.9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4006.10-4010.3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4006.10호부터 제4010.3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4011.10-4011.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4011.10호부터 제4011.2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4011.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4001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소호 제4011.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4011.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4011.4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4011.50-4011.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4001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소호 제4011.50호부터 제4011.9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4012.11-401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4001호나 제4011호의 것은 제외한다) 소호 제4012.11호부터 제4012.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4013.10-401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4013.10호부터 제4013.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4014.10-401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4014.10호부터 제4015.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4016.10-4017.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4016.10호부터 제4017.0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8부	원피·가죽·모피와 이들의 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제41류-제43류)
제41류	원피(모피는 제외한다)와 가죽
4101.20-4103.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4101.20호부터 제4103.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4104.11-4106.9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4104.11호부터 제4106.92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4107.11-4115.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4107.11호부터 제4115.2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42류	가죽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4201.00-4206.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4201.00호부터 제4206.0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43류	모피·인조모피와 이들의 제품
4301.10-4301.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4301.10호부터 제4301.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4302.11-4304.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4302.11호부터 제4304.0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9부	목재와 그 제품, 목탄, 코르크와 그 제품, 짚·에스파르토(esparto)나 그 밖의 조물 재료의 제품,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과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제44류-제46류)
제44류	목재와 그 제품, 목탄
4401.10-4403.9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4401.10호부터 제4403.9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4404.10-440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4404.10호부터 제4408.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4409.10-4409.2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4409.10호부터 제4409.2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4410.11-4411.9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4410.11호부터 제4411.9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4412.10-4413.0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4412.10호부터 제4413.0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4414.00-4417.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4414.00호부터 제4417.0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4418.10-4418.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4418.10호부터 제4418.2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4418.40-441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4418.40호부터 제4418.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4419.00-4420.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4419.00호부터 제4420.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4421.10-442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4421.10호부터 제4421.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45류	코르크(cork)와 그 제품
4501.10-4501.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4501.10호부터 제4501.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4502.00-450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4502.00호부터 제4504.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46류	짚·에스파르토(esparto)나 그 밖의 조물 재료의 제품,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과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
4601.21-4601.9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4601.21호부터 제4601.9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4602.11-460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4602.11호부터 제4602.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10부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종이·판지와 이들의 제품(제47류-제49류)
제47류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 또는 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701.00-4706.9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4701.00호부터 제4706.9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4707.10-4707.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4707.10호부터 제4707.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48류	종이와 판지, 제지용 펄프·종이·판지의 제품
4801.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4801.0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4802.10-4802.6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4802.10호부터 제4802.6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으로서, 이 호 내에서 폭이 150밀리미터 이하인 스트립이나 코일(롤) 모양, 또는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시트(sheet) 모양인 것으로서 한 변이 360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다른 한 변은 150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종이와 판지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한다.
4803.00-4809.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4803.00호부터 제4809.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4810.13-481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4810.13호부터 제4811.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으로서, 다음의 것을 허용한다: 가. 이 소호 안에서 폭이 150밀리미터 이하인 스트립이나 코일(롤) 모양, 또는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시트(sheet) 모양인 것으로서 한 변이 360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다른 한 변은 150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종이와 판지의 변경 나. 압연 공정이나 다른 재료를 덧대어 만든 것에는 원산지 지위를 부여한다 다. 제4811호 내에서 종이나 마분지(cardboard)를 기본재료로 하는 바닥 깔개로 변경(절단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812.00-4817.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4812.00호부터 제4817.3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4818.10-4818.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4803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소호 제4818.10호부터 제4818.2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4818.30-482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4818.30호부터 제4822.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4823.20-482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4823.20호부터 제4823.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으로서, 같은 호 내에서 종이나 판지를 기본재료로 하는 바닥깔개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한다(절단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제49류	인쇄서적·신문·회화·그 밖의 인쇄물, 수제(手製)문서·타자문서·도면
4901.10-4911.9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4901.10호부터 제4911.91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4911.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4911.9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제50류-제63류)
제50류	견
5001.00-5003.0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5001.00호부터 제5003.0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5004.00-5005.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205호부터 제5206호, 제5402호부터 제5406호, 또는 제5503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소호 제5004.00호부터 제5005.0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5006.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004호부터 제5005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소호 제5006.0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5007.10-500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205호부터 제5206호, 제5402호부터 제5406호, 또는 제5503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소호 제5007.10호부터 제5007.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류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말의 털로 만든 실과 직물
5101.11-5105.4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5101.11호부터 제5105.4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5106.10-5108.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205호부터 제5206호, 제5402호부터 제5406호, 또는 제5503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물품은 제외한다)에서 소호 제5106.10호부터 제5108.2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5109.10-5110.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08호, 제5205호부터 제5206호, 제5402호부터 제5406호, 또는 제5503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물품은 제외한다)에서 소호 제5109.10호부터 제5110.0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5111.11-5113.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205호부터 제5206호, 제5402호부터 제5406호, 또는 제5503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물품은 제외한다)에서 소호 제5111.11호부터 제5113.0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2류	면
5201.00-5203.0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5201.00호부터 제5203.0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5204.11-5207.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402호부터 제5406호, 또는 제5503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물품은 제외한다)에서 소호 제5204.11호부터 제5207.1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5207.90-5212.2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205호부터 제5206호, 제5402호부터 제5406호, 또는 제5503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물품은 제외한다)에서 소호 제5207.90호부터 제5212.25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3류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 종이실(paper yarn)과 종이실로 만든 직물
5301.10-5305.0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5301.10호부터 제5305.0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5306.10-530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5306.10호부터 제5308.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5309.11-5309.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205호부터 제5206호, 제5402호부터 제5406호, 또는 제5503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물품은 제외한다)에서 소호 제5309.11호부터 제5309.2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5310.10-531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205호부터 제5206호, 제5307호, 제5402호부터 제5406호, 또는 제5503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물품은 제외한다)에서 소호 제5310.10호부터 제5310.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5311.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205호부터 제5206호, 제5402호부터 제5406호, 또는 제5503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물품은 제외한다)에서 소호 제5311.0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4류	인조필라멘트, 인조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
5401.10-5401.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5401.10호부터 제5401.2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5402.11-5407.94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205호부터 제5206호, 또는 제5503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물품은 제외한다)에서 소호 제5402.11호부터 제5407.9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5408.10-5408.34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205호부터 제5206호, 제5401호, 제5402호, 제5404호, 제5406호 또는 제5503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물품은 제외한다)에서 소호 제5408.10호부터 제5408.3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엘살바도르)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205호부터 제5206호 또는 제5503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물품은 제외한다)에서 소호 제5408.10호부터 제5408.3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5류	인조스테이플섬유
5501.10-5502.0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5501.10호부터 제5502.0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5503.11-550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5503.11호부터 제5504.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5505.10-5505.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503호부터 제5504호까지의 물품은 제외한다)에서 소호 제5505.10호부터 제5505.2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5506.10-5507.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503호부터 제5505호까지의 물품은 제외한다)에서 소호 제5506.10호부터 제5507.0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5508.10-5509.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205호부터 제5206호, 제5402호부터 제5406호, 또는 제5503호부터 제5507호까지의 물품은 제외한다)에서 소호 제5508.10호부터 제5509.9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5510.11-5510.90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205호부터 제5206호, 제5402호부터 제5406호, 또는 제5505호부터 제5507호까지의 물품은 제외한다)에서 소호 제5510.11호부터 제5510.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엘살바도르)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205호부터 제5206호, 제5402호부터 제5406호, 또는 제5503호부터 제5507호까지의 물품은 제외한다)에서 소호 제5510.11호부터 제5510.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5511.10-5515.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205호부터 제5206호, 제5402호부터 제5406호, 또는 제5503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물품은 제외한다)에서 소호 제5511.10호부터 제5515.9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5516.11-5516.94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205호부터 제5206호, 제5402호부터 제5406호,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물품은 제외한다)에서 소호 제5516.11호부터 제5516.9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엘살바도르)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205호부터 제5206호, 제5402호부터 제5406호, 또는 제5503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물품은 제외한다)에서 소호 제5516.11호부터 제5516.9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6류	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 특수사,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과 이들의 제품
5601.21-5609.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204호부터 제5207호, 제5401호부터 제5406호, 또는 제5503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물품은 제외한다)에서 소호 제5601.21호부터 제5609.0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7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 깔개
5701.10-5705.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204호부터 제5207호, 제5401호부터 제5406호, 또는 제5503호부터 제5511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에서 소호 제5701.10호부터 제5705.0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8류	특수직물, 터프트(tuft)한 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tapestry), 트리밍(trimming), 자수천
5801.10-5811.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204호부터 제5207호, 제5401호부터 제5406호, 또는 제5503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물품은 제외한다)에서 소호 제5801.10호부터 제5811.0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9류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공업용인 방직용 섬유 제품
5901.10-591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204호부터 제5207호, 제5401호부터 제5406호, 또는 제5503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물품은 제외한다)에서 소호 제5901.10호부터 제5911.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60류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
6001.10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205호부터 제5206호, 제5402호, 제5404호, 제5406호, 또는 제5508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물품은 제외한다)에서 소호 제6001.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엘살바도르)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205호부터 제5206호, 제5402호부터 제5406호, 또는 제5503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물품은 제외한다)에서 소호 제6001.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6001.21-6001.29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205호부터 제5206호, 제5402호, 제5404호, 제5406호, 또는 제5508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물품은 제외한다)에서 소호 제6001.21호부터 제6001.2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엘살바도르)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205호부터 제5206호, 제5402호부터 제5406호, 제5503호부터 제5511호, 제5802호, 또는 소호 제5804.21호부터 제5804.29호까지의 물품은 제외한다)에서 소호 제6001.21호부터 제6001.2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6001.91-6001.99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205호부터 제5206호, 제5402호, 제5404호, 제5406호, 또는 제5508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물품은 제외한다)에서 소호 제6001.91호부터 제6001.9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엘살바도르)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205호부터 제5206호, 제5402호부터 제5406호, 제5503호부터 제5511호, 또는 소호 제5804.21호부터 제5804.29호까지의 물품은 제외한다)에서 소호 제6001.91호부터 제6001.9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6002.40-6006.90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205호부터 제5206호, 제5402호, 제5404호, 제5406호, 또는 제5508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물품은 제외한다)에서 소호 제6002.40호부터 제6006.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엘살바도르)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205호부터 제5206호, 제5402호부터 제5406호, 또는 제5503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물품은 제외한다)에서 소호 제6002.40호부터 제6006.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61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에만 적용한다)
6101.20-6117.90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6101.20호부터 제6117.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엘살바도르)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204호부터 제5212호, 제5401호부터 제5408호, 제5503호부터 제5516호, 제5802호, 제5804호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물품은 제외한다)에서 소호 제6101.20호부터 제6117.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62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6201.11-6217.90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6201.11호부터 제6217.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엘살바도르)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204호부터 제5212호, 제5401호부터 제5408호, 제5503호부터 제5516호, 제5802호, 제5804호,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소호 제6201.11호부터 제6217.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63류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그 밖의 물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방직용 섬유제품, 낡마
6301.10-6308.00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6301.10호부터 제6308.0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엘살바도르)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204호부터 제5212호, 제5401호부터 제5408호, 제5503호부터 제5516호, 제5802호, 제5804호,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물품은 제외한다)에서 소호 제6301.10호부터 제6308.0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6309.00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6309.0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엘살바도르)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61류 또는 제62류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소호 제6309.0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6310.10-631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6310.10호부터 제6310.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12부	신발류·모자류·산류(傘類)·지팡이·시트스틱(seat-stick)·채찍·승마용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조제 깃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제64류-제67류)
제64류	신발류·각반과 이와 유사한 것, 이들의 부분품
6401.10-6401.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6401.10호부터 제6401.9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6402.12-640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소호 제6406.10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소호 제6402.12호부터 제6405.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6406.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6406.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6406.20-6406.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6406.20호부터 제6406.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제65류	모자류와 그 부분품
6501.00-6502.0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6501.00호부터 제6502.0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6504.00-6506.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6504.00호부터 제6506.9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6507.0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6507.0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66류	산류(傘類)·지팡이·시트스틱(seat-stick)·채찍·승마용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6601.10-6602.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6601.10호부터 제6602.0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6603.20-6603.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6603.20호부터 제6603.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67류	조제 깃털·송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
6701.00-670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6701.00호부터 제6704.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13부	돌·플라스터(plaster)·시멘트·석면·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자제품, 유리·유리제품(제68류-제70류)
제68류	돌·플라스터(plaster)·시멘트·석면·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6801.00-6812.9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6801.00호부터 제6812.93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6812.99-6813.8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6812.99호부터 제6813.8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6814.10-6815.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6814.10호부터 제6815.9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69류	도자제품
6901.00-6914.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6901.00호부터 제6914.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70류	유리·유리제품
7001.00-7002.3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7001.00호부터 제7002.3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003.12-7003.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7003호부터 제7009호까지의 물품은 제외한다)에서 소호 제7003.12호부터 제7003.2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003.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7003.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004.20-7005.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7003호부터 제7009호까지의 물품은 제외한다)에서 소호 제7004.20호부터 제7005.3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006.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7006.0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007.11-7009.9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7003호부터 제7009호까지의 물품은 제외한다)에서 소호 제7007.11호부터 제7009.92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010.10-7020.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7010.10호부터 제7020.0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14부	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제71류)
제71류	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7101.10-7105.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7101.10호부터 제7105.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106.10-7108.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7106.10호부터 제7108.12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108.1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7108.1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108.20-711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7108.20호부터 제7118.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15부	비금속(卑金屬)과 그 제품(제72류-제83류)
제72류	철강
7201.10-721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7201.10호부터 제7211.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212.10-7212.6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7210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소호 제7212.10호부터 제7212.6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213.10-7213.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7214호나 제7215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소호 제7213.10호부터 제7213.9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214.10-7214.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7213호나 제7215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소호 제7214.10호부터 제7214.9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215.10-721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7213호나 제7214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소호 제7215.10호부터 제7215.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216.10-7218.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7216.10호부터 제7218.1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218.91-7218.9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7218.91호부터 제7218.9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219.11-7219.2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7219.11호부터 제7219.2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219.31-7220.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7219.31호부터 제7220.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221.00-7229.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7221.00호부터 제7229.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73류	철강의 제품
7301.10-7306.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7301.10호부터 제7306.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307.11-7317.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7307.11호부터 제7317.0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318.11-7319.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7318.11호부터 제7319.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20.10-7320.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7320.10호부터 제7320.2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2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7320.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21.11-732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7321.11호부터 제7321.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22.11-732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7322.11호부터 제7322.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7323.10-7326.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7323.10호부터 제7326.2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32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7326.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제74류	구리와 그 제품
7401.00-7407.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7401.00호부터 제7407.2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408.11-7408.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7407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소호 제7408.11호부터 제7408.2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409.11-7409.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7409.11호부터 제7409.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410.11-7410.2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7409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소호 제7410.11호부터 제7410.22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411.10-7411.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7411.10호부터 제7411.2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412.10-7412.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7411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소호 제7412.10호부터 제7412.2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413.00-7415.3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7413.00호부터 제7415.3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418.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7418.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418.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7418.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419.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7419.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419.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7419.9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419.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7419.9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제75류	니켈과 그 제품
7501.10-750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7501.10호부터 제7508.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76류	알루미늄과 그 제품
7601.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7601.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601.20-7604.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7601.20호부터 제7604.2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605.11-7605.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7604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소호 제7605.11호부터 제7605.2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606.11-7607.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7606.11호부터 제7607.11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607.19-7607.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7607.19호부터 제7607.2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608.10-7608.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7608.10호부터 제7608.2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609.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7608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소호 제7609.0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610.10-7616.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7610.10호부터 제7616.9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78류	납과 그 제품
7801.10-7806.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7801.10호부터 제7806.0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79류	아연과 그 제품
7901.11-7907.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7901.11호부터 제7907.0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80류	주석과 그 제품
8001.10-8001.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001.10호부터 제8001.2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002.00-8007.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002.00호부터 제8007.0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81류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 서멧(cermet), 이들의 제품

8101.10-8112.9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101.10호부터 제8112.9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113.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113.0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82류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공구·도구·칼붙이·스푼·포크, 이들의 부분품
8201.10-8202.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201.10호부터 제8202.1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202.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202.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02.3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202.3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202.3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202.3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02.40-8202.9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202.40호부터 제8202.9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203.10-8204.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203.10호부터 제8204.2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205.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205.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05.20-8205.5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205.20호부터 제8205.51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205.5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205.5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05.60-8205.7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205.60호부터 제8205.7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205.90-8206.0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205.90호부터 제8206.0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공구의 각 구성부품이 원산지물품인 경우로 한정한다.
8207.13-8207.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207.13호부터 제8207.2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207.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207.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07.40-820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207.40호부터 제8208.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209.0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209.0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210.00-821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210.00호부터 제8212.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13.00-8214.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213.00호부터 제8214.1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214.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214.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21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214.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215.10-8215.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215.10호부터 제8215.2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215.91-8215.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215.91호부터 제8215.9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83류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각종 제품
8301.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301.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301.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301.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301.30-8302.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301.30호부터 제8302.2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302.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302.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 요구되지 않는다.
8302.41-8302.6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302.41호부터 제8302.6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303.00-8305.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303.00호부터 제8305.1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305.20-830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305.20호부터 제8305.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306.10-8309.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306.10호부터 제8309.1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309.90-8310.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309.90호부터 제8310.0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311.10-831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311.10호부터 제8311.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16부	기계류·전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제84류-제85류)
제84류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8401.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01.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01.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01.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01.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01.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01.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01.4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02.11-8402.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02.11호부터 제8402.2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0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02.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03.10-8405.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03.10호부터 제8405.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06.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06.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06.81-8406.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06.81호부터 제8406.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07.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07.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07.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07.2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07.29-8407.3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07.29호부터 제8407.3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07.90-8408.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07.90호부터 제8408.1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08.20-8409.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08.20호부터 제8409.91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09.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09.9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10.11-8412.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10.11호부터 제8412.8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1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12.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13.11-8413.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13.11호부터 제8413.2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13.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13.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413.40-8413.8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13.40호부터 제8413.82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13.91-8413.9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13.91호부터 제8413.92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414.10-8414.4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14.10호부터 제8414.4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14.5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14.5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14.5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14.5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14.6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14.6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14.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14.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1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14.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15.10-8415.83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15.10호부터 제8415.83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1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15.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16.10-8416.3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16.10호부터 제8416.3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1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16.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17.10-8417.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17.10호부터 제8417.8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1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17.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18.10-8418.2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18.10호부터 제8418.2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18.30-8418.5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18.30호부터 제8418.5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18.6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18.6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18.6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18.6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18.9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18.9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18.9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18.9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19.11-8419.1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19.11호부터 제8419.1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19.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19.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19.31-8419.3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19.31호부터 제8419.32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19.3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19.3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19.40-8419.8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19.40호부터 제8419.8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19.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19.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20.10-8421.1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20.10호부터 제8421.12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21.1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21.1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21.21-8421.2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21.21호부터 제8421.22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21.23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21.2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421.2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21.2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21.3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21.3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421.3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21.3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21.91-8421.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21.91호부터 제8421.9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22.1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22.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22.19-8422.4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22.19호부터 제8422.4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2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22.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23.10-8423.3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23.10호부터 제8423.3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23.81-8423.8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23.81호부터 제8423.82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23.8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23.8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2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23.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24.10-8424.3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24.10호부터 제8424.3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24.8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24.8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24.8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24.8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2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24.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25.11-8425.4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25.11호부터 제8425.41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25.42-8425.4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25.42호부터 제8425.4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26.11-8427.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26.11호부터 제8427.2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2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27.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28.10-8429.5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28.10호부터 제8429.5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430.10-8431.4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30.10호부터 제8431.4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32.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소호 제8432.90호의 플라우(쟁기)의 부분품은 제외한다]에서 소호 제8432.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32.21-8432.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32.21호부터 제8432.8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3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32.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33.11-8433.6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33.11호부터 제8433.6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3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33.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34.10-8434.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34.10호부터 제8434.2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3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34.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35.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35.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3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35.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36.10-8436.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36.10호부터 제8436.8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36.91-8436.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36.91호부터 제8436.9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37.10-8437.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37.10호부터 제8437.8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3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37.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38.10-8438.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38.10호부터 제8438.8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3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38.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39.10-8439.3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39.10호부터 제8439.3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39.91-8439.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39.91호부터 제8439.9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40.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40.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4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40.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41.10-8441.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41.10호부터 제8441.8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4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41.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42.3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42.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42.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42.4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42.5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42.5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43.11-8443.1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43.11호부터 제8443.1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43.31-8443.3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43.31호부터 제8443.32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43.3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43.3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43.91-8443.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43.91호부터 제8443.9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44.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44.0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45.11-8447.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45.11호부터 제8447.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48.11-8448.1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48.11호부터 제8448.1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48.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48.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48.31-8449.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48.31호부터 제8449.0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50.11-8450.1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50.11호부터 제8450.1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50.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50.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5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50.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51.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51.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51.2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51.2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51.29-8451.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51.29호부터 제8451.8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5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51.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52.10-8452.2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52.10호부터 제8452.2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52.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52.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52.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52.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53.10-8453.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53.10호부터 제8453.8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5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53.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54.10-8454.3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54.10호부터 제8454.3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5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54.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55.10-8455.2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55.10호부터 제8455.22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55.30-845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55.30호부터 제8455.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56.10-8465.9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56.10호부터 제8465.9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66.10-8466.9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66.10호부터 제8466.9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67.11-8467.8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67.11호부터 제8467.8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67.91-8467.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67.91호부터 제8467.9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68.10-8468.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68.10호부터 제8468.8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6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68.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69.0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69.0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70.10-8471.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70.10호부터 제8471.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72.10-8472.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72.10호부터 제8472.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473.10-8473.5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73.10호부터 제8473.5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74.10-8474.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74.10호부터 제8474.8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7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74.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75.10-8475.2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75.10호부터 제8475.2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7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75.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76.21-8476.8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76.21호부터 제8476.8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7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76.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77.10-8477.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77.10호부터 제8477.8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7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77.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78.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78.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7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78.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79.10-8479.6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79.10호부터 제8479.6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79.71-8479.7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79.71호부터 제8479.7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479.81-8479.8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79.81호부터 제8479.82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79.8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79.8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479.90-8480.7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79.90호부터 제8480.7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81.10-8481.4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81.10호부터 제8481.4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81.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81.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8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81.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82.10-8482.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82.10호부터 제8482.8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482.91-8482.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82.91호부터 제8482.9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483.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83.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83.20-8483.4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83.20호부터 제8483.4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483.5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83.5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83.6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83.6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48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83.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484.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84.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84.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84.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84.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84.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86.10-8486.4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86.10호부터 제8486.4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8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86.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87.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87.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8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487.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제85류	전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 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8501.10-8502.4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501.10호부터 제8502.4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03.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503.0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04.10-8504.5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504.10호부터 제8504.5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0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504.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05.11-8505.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505.11호부터 제8505.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06.10-8506.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506.10호부터 제8506.8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0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506.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07.10-8507.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507.10호부터 제8507.8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0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507.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08.1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508.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08.19-8508.6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508.19호부터 제8508.6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508.7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508.7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09.40-8509.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509.40호부터 제8509.8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09.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509.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10.10-8510.3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510.10호부터 제8510.3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1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510.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11.10-8511.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511.10호부터 제8511.8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1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511.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12.10-8512.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512.10호부터 제8512.2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12.30-8512.4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512.30호부터 제8512.4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1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512.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13.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513.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1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513.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14.10-8514.4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514.10호부터 제8514.4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1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514.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15.11-8515.3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515.11호부터 제8515.31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15.3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515.3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515.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515.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1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515.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516.10-8516.7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516.10호부터 제8516.7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16.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516.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1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516.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17.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517.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17.1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517.1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17.18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517.1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17.6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반송통신용·디지털 통신용 전기통신 기기는 제외한다)에서 소호 제8517.6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17.6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517.6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17.6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517.6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으로서, 다음의 것을 허용한다: 가. 키트나 완전분해물품(CKD)에서 비디오폰 게임으로의 전체 조립 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무선전신이나 무선전화용 기기로 변경,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17.7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517.7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18.10-8518.5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518.10호부터 제8518.5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1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518.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19.20-8521.90	키트나 완전분해물품(CKD)에서 전체 세트로의 조립을 포함하여,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519.20호부터 제8521.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22.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522.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22.90-8523.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522.90호부터 제8523.8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25.50-8526.92	캠코더(정지화상의 것을 포함한다)의 전체 조립과, 키트나 완전분해물품(CKD)에서 게임으로의 전체 조립을 포함하여,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525.50호부터 제8526.92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27.12-8527.99	키트나 완전분해물품(CKD)에서 전체 세트로의 조립을 포함하여,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527.12호부터 제8527.9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28.4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528.4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28.49	키트나 완전분해물품(CKD)에서 전체 세트로의 조립을 포함하여,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528.4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28.5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528.5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28.59	키트나 완전분해물품(CKD)에서 전체 세트로의 조립을 포함하여,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528.5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28.6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528.6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28.69-8528.73	키트나 완전분해물품(CKD)에서 전체 세트로의 조립을 포함하여,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528.69호부터 제8528.73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29.10-8529.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529.10호부터 제8529.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30.10-8530.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530.10호부터 제8530.8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3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530.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31.10-8531.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531.10호부터 제8531.8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3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531.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32.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532.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32.21-8532.3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532.21호부터 제8532.3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3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532.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33.10-8533.2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533.10호부터 제8533.2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33.31-8533.4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533.31호부터 제8533.4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3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533.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34.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534.0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35.10-8536.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535.10호부터 제8536.1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36.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536.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36.30-8536.4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536.30호부터 제8536.41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36.49-8536.6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536.49호부터 제8536.61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36.69-8536.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536.69호부터 제8536.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37.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537.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37.20-853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537.20호부터 제8538.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39.10-8539.4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539.10호부터 제8539.41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39.4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539.4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39.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539.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40.11-8542.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540.11호부터 제8542.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43.10-8543.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543.10호부터 제8543.2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43.3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543.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은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43.7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543.7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4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543.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44.11-8544.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544.11호부터 제8544.2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44.3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544.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44.4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544.4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44.4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544.4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44.60-8545.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544.60호부터 제8545.2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45.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545.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46.10-8547.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546.10호부터 제8547.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48.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548.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48.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548.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제17부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제86류-제89류)
제86류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차량과 이들의 부분품, 철도용이나 궤도용 장비품과 그 부분품,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 각종 교통신호용 기기
8601.10-8606.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601.10호부터 제8606.9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607.11-8609.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607.11호부터 제8609.0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제87류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부속품
8701.10-8706.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701.10호부터 제8706.0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707.10-870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707.10호부터 제8707.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708.10-8708.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708.10호부터 제8708.9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709.11-8709.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709.11호부터 제8709.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710.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710.0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711.10-871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711.10호부터 제8713.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714.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714.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714.20-8714.9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714.20호부터 제8714.9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715.0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715.0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716.10-8716.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716.10호부터 제8716.2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716.31-8716.3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716.31호부터 제8716.3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716.4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716.4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716.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716.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71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716.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제88류	항공기와 우주선, 이들의 부분품
8801.00-880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801.00호부터 제8803.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804.00-8805.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804.00호부터 제8805.1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805.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805.2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805.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805.2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제89류	선박과 수상 구조물
8901.10-890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901.10호부터 제8907.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908.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8908.0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18부	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의료용 기기, 시계, 악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제90류-제92류)
제90류	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의료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001.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9001.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001.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9001.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01.30-9001.5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9001.30호부터 제9001.5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001.90-9004.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9001.90호부터 제9004.1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0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9004.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005.10-9005.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9005.10호부터 제9005.8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0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9005.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06.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9006.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06.3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9006.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006.40-9006.6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9006.40호부터 제9006.6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06.91-9006.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9006.91호부터 제9006.9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07.10-9007.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9007.10호부터 제9007.2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07.91-9007.9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9007.91호부터 제9007.92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08.5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9008.5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0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9008.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10.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9010.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010.50-9010.6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9010.50호부터 제9010.6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1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9010.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11.10-9011.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9011.10호부터 제9011.8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1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9011.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12.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9012.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1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9012.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13.10-9013.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9013.10호부터 제9013.8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1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9013.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14.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9014.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014.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9014.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14.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9014.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01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9014.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015.10-9015.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9015.10호부터 제9015.8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01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9015.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016.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9016.0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017.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9017.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017.20-9017.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9017.20호부터 제9017.8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1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9017.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18.11-9022.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9018.11호부터 제9022.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023.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9023.0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024.10-9024.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9024.10호부터 제9024.8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02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9024.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25.11-9025.1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9025.11호부터 제9025.1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025.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9025.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02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9025.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26.10-9026.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9026.10호부터 제9026.8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02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9026.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027.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9027.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027.20-9027.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9027.20호부터 제9027.8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02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9027.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28.10-9028.3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9028.10호부터 제9028.3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028.90-9029.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9028.90호부터 제9029.2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029.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9029.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30.10-9030.4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9030.10호부터 제9030.4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030.8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9030.8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30.84-9030.8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9030.84호부터 제9030.8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03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9030.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031.10-9031.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9031.10호부터 제9031.2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031.41-9031.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9031.41호부터 제9031.8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3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9031.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32.10-9032.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9032.10호부터 제9032.2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032.8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9032.8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32.8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9032.8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032.90-9033.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9032.90호부터 제9033.0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91류	시계와 그 부분품
9101.11-9109.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9101.11호부터 제9109.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110.11-9110.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9110.11호부터 제9110.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111.10-911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9111.10호부터 제9114.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제92류	악기와 그 부분품과 부속품
9201.10-9209.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9201.10호부터 제9209.9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제19부	무기·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제93류)
제93류	무기·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301.10-9307.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9301.10호부터 제9307.0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제20부	잡품(제94류-제96류)
제94류	가구, 침구·매트리스·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램프·조명기구,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 조립식 건축물
9401.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9401.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401.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9401.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401.30-9401.7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9401.30호부터 제9401.7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401.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9401.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40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9401.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402.10-9402.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9402.10호부터 제9402.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403.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소호 제9403.20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소호 제9403.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403.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9403.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403.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9403.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403.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9403.4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403.5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9403.5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403.6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9403.6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403.7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9403.7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403.81-9403.8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9403.81호부터 제9403.8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40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9403.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404.10-9404.2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9404.10호부터 제9404.2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404.30-9404.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9404.30호부터 제9404.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405.10-9405.6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9405.10호부터 제9405.6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405.91-9405.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9405.91호부터 제9405.9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406.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9406.0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제95류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와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503.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9503.0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504.20-9504.4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9504.20호부터 제9504.4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504.50-9504.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9504.50호부터 제9504.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505.10-9505.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9505.10호부터 제9505.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506.11-9506.3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9506.11호부터 제9506.3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506.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9506.4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506.51-9506.6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9506.51호부터 제9506.61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506.6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9506.6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506.69-9506.9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9506.69호부터 제9506.9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507.10-950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9507.10호부터 제9507.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508.10-950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9508.10호부터 제9508.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제96류	잡품

9601.10-960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9601.10호부터 제9601.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602.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9602.0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603.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9603.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603.21-9604.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9603.21호부터 제9604.0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605.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9605.0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다만, 각 구성부품이 원산지물품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606.10-9606.3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9606.10호부터 제9606.3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607.11-9607.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9607.11호부터 제9607.2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608.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소호 제9608.60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소호 제9608.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608.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소호 제9608.60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소호 제9608.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608.30-9608.4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소호 제9608.60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소호 제9608.30호부터 제9608.4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608.5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9608.5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608.6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9608.6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608.91-9609.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9608.91호부터 제9609.1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609.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9609.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609.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9609.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610.00-9612.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9610.00호부터 제9612.2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613.10-9613.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9613.10호부터 제9613.8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61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9613.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614.00-961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9614.00호부터 제9615.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616.10-9618.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그 각각의 부분품을 포함한다)에서 소호 제9616.10호부터 제9618.0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619.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9619.0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제21부	예술품·수집품·골동품(제97류)
제97류	예술품·수집품·골동품
9701.10-9706.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9701.10호부터 제9706.0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부속서 3-나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1. 한국의 헌법상 위임 및 안보 이익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증진을 위한 당사국들의 약속, 그리고 그 세계적 목표를 향한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설치된다.
2. 위원회는 당사국들의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이 협정의 발효일 후 1년 이내에 회합하며, 그 후 매년 최소 1회 또는 상호 합의하는 대로 어느 때나 회합한다.
3. 위원회는 한반도의 여건을 검토하고,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리적 구역을 결정한다. 위원회는 또한 역외가공지역에서의 원산지 지위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수립한다.

부속서 3-다
원산지 증명서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1. 수출자의 이름 및 주소: 전화번호: 팩스(선택): 이메일:	2. 포괄증명기간: 연도 월 일 연도 월 일 / / /부터 / / /까지				
3. 생산자의 이름 및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4. 수입자의 이름 및 주소: 전화번호: 팩스(선택): 이메일:				
5. 물품명세:	6. HS 품목 번호	7. 원산지 기준	8. 생산자	9. 역내가 치포함 비율 (RVC)	10. 원산지 국가
11. 비고: 본인은 다음을 보증한다. - 이 문서상 정보는 사실이고 정확하며, 본인이 그러한 진술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 본인은 이 문서상 또는 이 문서와 관련한 모든 허위진술이나 중대한 누락사항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이해한다. - 본인은 이 증명서를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유지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 제공할 것에 동의하며, 이 증명서를 받은 모든인에게 이 증명서의 정확성이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모든 변경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할 것에 동의한다. - 상품은 한쪽 당사국의 영역을 원산지로 하며 그 상품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명시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한다. 이 증명서는, 모든 첨부물을 포함하여, ____쪽으로 구성된다.					
12. 서명권자의 서명:			회사:		
이름:			직위:		
연도 월 일 날짜: / / /			전화번호: 팩스(선택):		

원산지 증명서 작성을 위한 설명

- 제1란: 수출자의 법적 이름, 주소(도시 및 국가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팩스번호(선택) 및 이메일 주소를 기재한다.
- 제2란: 이 증명서가 1년(포괄증명기간)까지의 특정 기간 동안 당사국으로 수입되는 제5란에 기술된 바와 같은 동일 상품의 복수선적을 다룰 경우, 이 란을 작성한다. “부터”는 증명서가 포괄 증명서의 적용을 받는 상품에 적용 가능하게 되는 날이다(이 날은 이 증명서가 서명된 날보다 빠를 수 있다). “까지”는 서명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포괄증명기간이 만료되는 날이다. 이 증명서를 근거로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한 상품의 선적은 이 날짜들 사이에 발생하여야 한다.
- 제3란: 생산자가 한 명인 경우, 그 생산자의 법적 이름, 주소(도시 및 국가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기재한다. 둘 이상의 생산자가 증명서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다수”로 기재하고, 제5란에 기술된 상품(들)과 상호 참조된 모든 생산자의 법적 이름, 주소(도시 및 국가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포함하여 모든 생산자의 목록을 첨부한다. 이러한 정보의 비밀 유지를 바랄 경우, “요청에 따라 제공 가능함”이라고 기재하는 것은 수용가능하다.
- 제4란: 수입자의 법적 이름, 주소(도시 및 국가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팩스번호(선택) 및 이메일 주소를 기재한다.
- 제5란: 각 상품의 물품명세를 제공한다. 물품명세는 그 물품명세를 그 상품에 대한 송장의 물품명세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물품명세에 연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세부사항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증명서가 상품의 단일 선적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상업 송장에 기재된 송장 번호를 기재한다.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배송주문번호, 구매주문번호 또는 상품을 식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그 밖의 번호와 같은 다른 고유 참조 번호를 기재한다. 다만, 그 상품에 대하여 수출 당사국의 영역 밖에 소재하는 인에 의하여 송장이 발부된 경우, 이전 정보의 포함은 선택사항이다.
- 제6란: 제5란에 기술된 각 상품에 대하여,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세번 6단위까지 기재한다.
- 제7란: 제5란에 기술된 각 상품에 대하여, 아래 기준(A부터 D까지) 중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를 기재한다(택일한다). 원산지 규정은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과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포함되어 있다.

원산지 기준

- A 상품이 제3.1조에 언급된 바와 같이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전적으로 생산된” 경우
- B 상품이 제3.1조에 언급된 바와 같이 전적으로 원산지 재료로만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 C 상품이 제3.1조에 언급된 바와 같이 전적으로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고,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세부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 D 상품이 제3.15조(역외가공)의 적용을 받는 경우
- 제8란: 제5란에 기술된 각 상품에 대하여, 본인이 상품의 생산자인 경우 “예”를 기재한다. 본인이 상품의 생산자가 아닌 경우, “아니오”를 기재하고 이 증명서가 다음에 기초하는지에 따라 (1), (2) 또는 (3)을 기재한다: (1) 상품이 원산지 상품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본인의 인지, (2) 상품이 원산지 상품 자격을 갖추었다는 생산자의 서면 진술(원산지 증명서는 제외한다)에 대한 본인의 신뢰, 또는 (3)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한, 그 상품을 위하여 작성되고 서명된 원산지 증명서
- 제9란: 제5란에 기술된 각 상품에 대하여, 해당 상품이 역내가치포함비율(RVC) 요건의 적용을 받는 경우, 역내가치포함비율이 공제법에 따라 계산된 경우에는 “BD”를, 또는 집적법에 따라 계산된 경우에는 “BU”를 명기한다. [참조: 제3.3조(역내가치포함비율(RVC))]
- 제10란: 모든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원산지 국가의 이름을 기재한다: 한국(KR), 코스타리카(CR), 엘살바도르(SV), 온두라스(HN), 니카라과(NI), 파나마(PA).
- 제11란: 이 란은 제5란에 기술된 상품 또는 상품들이 품목분류 또는 재료가치에 대한 사전심사 또는 심사를 받은 경우와 같이 이 증명서에 관하여 추가 사항이 있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다. 발급 당국, 참조 번호 및 발급 날짜를 기재한다. 제3.6조(누적), 제3.7조(최소허용수준), 제3.8조(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 또는 제3.9조(세트)가 적용되는 경우, 이 란에 기재될 수 있다. 그 상품에 대하여 제3국에서 송장이 발부된 경우, 이 란에 기재될 수 있다.

제12란: 이 란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하여야 한다. 날짜는 이 증명서가 작성되고 서명된 날짜이어야 한다.

참조: 여기의 지침은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기 위한 참고용으로만 사용되므로, 뒤쪽에 기재되거나 인쇄될 필요는 없다.